

##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간의 관·학 교류 협정서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은 물론 상호발전에도 유익하다는데 인식을 같아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정내용)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경산세무서는 대구대학교 회계·세무학부의 학생에게 회계·세무 관련 실습을 제공한다.
2.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경산세무서의 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다.
3.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교육 및 세정 분야 발전에 상호 협력한다.
4.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학술회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기타 행정정보의 교환에 상호 협력한다.
5.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공동 관심분야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6. 대구대학교와 경산세무서는 상호발전과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 (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 협정사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4조 (신의 성실의 원칙) 본 협정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제5조 (협정서의 효력) 1.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이용두

대구대학교 총장  
이 용 두

임경구

경산세무서 서장  
임 경 구